

## 제 7회 정기이사회

지협은 지난 11월 9일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모교정연구회의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수교육인정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공소 지도지과의사 규정을 개정해 지과의사가 기공소 지도지과의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역 내의 어느 치과기공소나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별도회계 설치의 건, 아태서울총회 준비비에 관한 건, 회원명부 발간비 부족액 지출의 건에 대해 토의하고 전문치의제도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 제87차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 참가결과, 99년도 의료보험특별사업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 보고했다.

##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는 11월 15일 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마련한 단일 안을 골격으로 하는 안을 도출해냈다.

시행위는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진료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수교육 1백시간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시행위는 15년이상 치과의료업무에 종사한 사람중 보수교육 1백시간을 이수한 경우와 치과대학,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 교육 또는 수련 지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차시험인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특례조항 등의 (안)을 마련했다.

## 임시이사회

지협은 지난 11월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문치의제도 관계법령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상정한 개정(안)과 지부에서 상정한 (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위원회의(안)을 일부 자구수정한 채 통과하였다.

## 전국시도지부장 간담회

전국시도지부장 간담회가 지난 11월 27일 대우재단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 경과조치로 치과의료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1백시간의 수련기간을 거쳐 시험불 자격을 준다 △ 수련병원의 경과조치로 2년 이내에 관련시설을 완비한다는 등의 지협 전문치의제도 시행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